

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도서관법」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)에서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(이하 “도서관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제3조(휴관일)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. 다만,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.
2.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
3. 도서관장이 자료 정리 및 시설 정비,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

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용시간)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.

제5조(이용자 등록 등) ①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

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

②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·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.

제6조(사용료)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.

제7조(행위의 제한)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도서관자료 이용 시 「저작권법」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2. 도서관 자료, 비품 및 시설의 오손·훼손 또는 파손 행위
3.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
4.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·열람하는 행위
5.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제8조(질서유지)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(자료의 대출)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.

1. 상호대차(相互貸借 : 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) 등

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

3.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변상)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용절차 등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